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8호의3 및 제8호의4를 각각 제8호의4 및 제8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이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대상자산이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그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인 경우에는 동일한 명목의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수취할 수 없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 나목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나. 제80조제1항제5호의3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발행주식이 상장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평가한”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재산 평가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영 시행 후 운용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8의2. (생 략) <u><신 설></u>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 ----- ----- -----. 1. ~ 8의2. (현행과 같음) <u>8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이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대상자산이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그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인 경우에는 동일한 명목의 운용보수를 이 중으로 수취할 수 없고, 일반</u>

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 나목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나. 제80조제1항제5호의3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

산출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
가 발행한 주식(발행주
식이 상장된 경우로 한정
한다)

8의3. · 8의4. (생략)

9. ~ 12. (생략)

② ~ ⑪ (생략)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생략)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

8의4. · 8의5. (현행 제8호의3 및 제8호의4와 같음)

9. ~ 12.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1. ~ 5. (생 략) ③ · ④ (생 략)	----- -----.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